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6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 장혜영·심상정·배진교

강은미 • 이은주 • 류호정

남인순 • 이동주 • 최혜영

홍정민 · 용혜인 · 최기상

의원(12인)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

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 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 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 마.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

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안 제18조).

- 바.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 사.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삭제).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활동지원급여비용"이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 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의3(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 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2.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3. 활동지원 대상인원
- 4. 재원 조달 방안
- 5. 활동지원기관 관리 방안
- 6. 활동지원인력 수급 및 처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과정
 - 3. 제8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4.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 5.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심신상태"를 "장애정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종합점수
- 7.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 8.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한다"를 "유지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5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신청서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를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1인 가구인 경우
-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
-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단한다"를 "중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량"을 "정도"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3(재난 및 위기상황의 긴급지원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수 행할 기관으로 활동지원기관 중 일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익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긴급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금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를 받은 수급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한 활동지원 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청인 또는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관련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법 시행 전에 수급자격결정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도 이법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 <삭 제> 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 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 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 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활동지원급여비용"이란 수 <신 설> 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 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 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말한 다. <신 설> 제3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 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 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신 설>

- <u>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u>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 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의3(기본계획)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 하게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 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2.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3. 활동지원 대상인원
 - 4. 재원 조달 방안
 - 5. 활동지원기관 관리 방안
 - 6. 활동지원인력 수급 및 처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신 설>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과정
 - 3. 제8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급자 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수 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 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4.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 5.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 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 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_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신 설>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 | 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다.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생략)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 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u>심신상</u> <u>태</u>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 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 한다.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

	격에 대한 특례) 65세 미만	인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	보
	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
	급자였던 사람의 경우 제5조	에
	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다.	
1	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장애정</u>	도
	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
	지) ①	

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본인부담금
- 5. (생략)
-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 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렁 으로 정하는 사항

<u><신</u>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u>1년</u>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u>인정한</u>다.

② (생략)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
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종
<u>합점수</u>
7.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8.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
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3년
·
유지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
<u>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197 이 2(스크리커이 사사)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 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 1. ~ 3. (생 략)
-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4. 제5조 ------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 기 등) ① ~ ③ (생 략) <u><</u>신 설>

-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 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 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 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신청서가 수급자격심의위 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활동지 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액) ① -----<u>수급자</u> 격 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 다. <후단 삭제>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한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1인 가구인 경우
-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

<신 설>

-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받을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② (생 략)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 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단서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
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
<u> </u>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
는 제한) ①
<u>제한할 수 있다</u>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단할 수 있다</u> .

신설>

- 1. ~ 3.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u>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현행과 같음)

4	 	
	 - <u>정도</u>	

제19조의3(재난 및 위기상황의 긴급지원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동지 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④ (생 략)

-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 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 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 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 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⑦ (생 략)
-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 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소 등) ① ------

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 원을 수행할 기관으로 활동지 원기관 중 일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익법인을 우선 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긴급지원의 신청, 결정 통 지, 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5)		
	<u>급품</u>	

⑥·⑦ (현행과 같음)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 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 급자------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 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 6. (생략)

② ~ ⑤ (생 략)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② |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1.•2. (현행과 같음)
3 <u>宁</u>

- 4. ~ 6.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③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최저 임금,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 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 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 담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 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 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 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 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외 딴곳·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 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 란한 사람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④ (생 략)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생 략) <신 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 원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 항의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신청인 또는 수급자는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관련 기록의 열 람·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